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정혜경의원·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93

발의연월일: 2024. 10. 15.

발 의 자:이재강·정혜경·강경숙

윤종군 • 정진욱 • 이기헌

강준현 • 임미애 • 이수진

윤종오 • 이용우 • 위성곤

서미화 · 박희승 · 김준형

박홍배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의 주요 과제인 초저출생 문제 대응과 관련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OECD 국가의 비혼 출산 비율과 국가 출산율은 비례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 비혼 출산 비율이 62.2%로 출생률 세계 1위임.

현행법은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 즉 비혼(非婚) 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난임 시술 지원 또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을 혼인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보장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는 바 개정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에서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현재 의료계에서는 난임을 '부부'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을 근거로 비혼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바, 비혼 여성의 임신·출산을 위해서는 동 법률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비혼 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는 한편, 난임의정의 중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혼인 여부와무관하게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이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13호 신설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생식 능력 장애가 진단되지 않은 성인인 남성과 여성이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 나. 생식적 병력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자연적인 생식과정으로 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자나 난자의 기증 등 의학 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
- 13. "비혼임신시술"이란 혼인(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 있지 않은 성인 여성에 대하여 임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비혼임신시술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비혼임신시술을 위한 시술비를 지 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혼임신시술로 임신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 소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3(비혼임신시술 의료기관 및 비혼임신시술 기준 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제3호가목·다목·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비혼임신시술이 가능한의료기관을 비혼임신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비혼임신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비혼임신시술 의료기관"으로 본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비혼임신시술 의료기관의 비혼임신시술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난임(難姙)"이란 <u>부</u>부(사실 11. ----다음 <u>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u>당하 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 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를 말한다. <신 설> 가. 생식 능력 장애가 진단되 지 않은 성인인 남성과 여 성이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 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나. 생식적 병력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자연적인 생식과정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자나 1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u>난자의 기증 등 의학적 개</u> 입이 필요한 상태

- 12. (현행과 같음)
- 13. "비혼임신시술"이란 혼인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 있지 않은 성인 여성에 대하여 임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제14조의2(비혼임신시술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비혼임신시술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혼임신시술로 임신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 소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비혼임신시술 의료기 관 및 비혼임신시술 기준 고 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

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다목 •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비혼임신시술이 가능한 의 료기관을 비혼임신시술 의료기 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비혼임신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비혼 임신시술 의료기관"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비혼임신 시술 의료기관의 비혼임신시술 에 관한 의학적 한의학적 기 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